심사보고서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2 2023. 6. 23.(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안치영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3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6월 9일

- 제40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치영 의원)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여성재단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결산 완료 및 결산서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0조)
 - (당초)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변경)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4조)(당초) 조례에 → (변경) 조례를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2019.12.3.일부개정, 2020.6.4.시행).
- 그러나 현행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됨.
- O 이에 상위법을 적용하여 충북여성재단의 결산 완료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0조는 상위법을 적용하여 충북여성재단의 결산 완료 및 결산서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법적·내용적으로 타당함.
- O 안 제14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충북여성재단의 결산 완료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 정을 통해 적기에 결산이 실시함으로써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O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호 중 "조례에"를 "조례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 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 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재단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제14조(재단에 대한 제재)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	
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u>조례에</u> 위반하여 예 산을 사용하였을 때	1 <u>조례를</u>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수익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 제1호

○ 사 유

- 「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므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